



구분	이용용도	이용용도	이용용도
A R	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공중주택으로 공 공주택에서 이용가능한 용도에 대한 시설계획에 따른 부대시설, 주차시설 등 관련 시설 계획	이용용도 외의 용도 -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용도에 불합치는 용도	이용용도 외의 용도 -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용도에 불합치는 용도
D	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단독주택(단독주 택 제외)으로 한 건축물에서 1층 이하에 설 치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별 제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중 불하용도 외의 용도 - 공동주택 및 공주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이용가능한 용도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- 공동주택 및 공주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이용가능한 용도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	이용용도 외의 용도 -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용도에 불합치는 용도	이용용도 외의 용도 -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용도에 불합치는 용도
E	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단독주택(단독주 택 제외)으로 한 건축물에서 1층 이하에 설 치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별 제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중 불하용도 외의 용도 - 공동주택 및 공주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이용가능한 용도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- 공동주택 및 공주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이용가능한 용도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	이용용도 외의 용도 -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용도에 불합치는 용도	이용용도 외의 용도 -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용도에 불합치는 용도
F	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단독주택(단독주 택 제외)으로 한 건축물에서 1층 이하에 설 치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별 제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중 불하용도 외의 용도 - 공동주택 및 공주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이용가능한 용도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- 공동주택 및 공주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이용가능한 용도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	이용용도 외의 용도 -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용도에 불합치는 용도	이용용도 외의 용도 -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용도에 불합치는 용도
G	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단독주택(단독주 택 제외)으로 한 건축물에서 1층 이하에 설 치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별 제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중 불하용도 외의 용도 - 공동주택 및 공주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이용가능한 용도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- 공동주택 및 공주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이용가능한 용도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	이용용도 외의 용도 -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용도에 불합치는 용도	이용용도 외의 용도 -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용도에 불합치는 용도
I	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단독주택(단독주 택 제외)으로 한 건축물에서 1층 이하에 설 치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별 제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중 불하용도 외의 용도 - 공동주택 및 공주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이용가능한 용도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- 공동주택 및 공주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이용가능한 용도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	이용용도 외의 용도 -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용도에 불합치는 용도	이용용도 외의 용도 -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용도에 불합치는 용도
J	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단독주택(단독주 택 제외)으로 한 건축물에서 1층 이하에 설 치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별 제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중 불하용도 외의 용도 - 공동주택 및 공주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이용가능한 용도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- 공동주택 및 공주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이용가능한 용도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	이용용도 외의 용도 -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용도에 불합치는 용도	이용용도 외의 용도 -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용도에 불합치는 용도
K	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단독주택(단독주 택 제외)으로 한 건축물에서 1층 이하에 설 치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별 제4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중 불하용도 외의 용도 - 공동주택 및 공주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이용가능한 용도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- 공동주택 및 공주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이용가능한 용도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	이용용도 외의 용도 -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용도에 불합치는 용도	이용용도 외의 용도 -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용도에 불합치는 용도

지 구 계 건축한계선 판상형 평행배치

A0 가구번호 차량진출입불허

-00 획지번호 건축물 직각배치구간

획지분할선 통경축(10M)

건축물의 밀도 등

용적률(%) 최고층수

건폐율(%) 최저층수

공주 월송 공공주택지구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

S = 1 : 3 , 0 0 0



0 25 50 75 100 200m

